|  |  |  |
| --- | --- | --- |
| **기업 재편업무 기업소득세**  **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0년 제7호  《기업 재편업무 기업소득세 관리방법》을 공포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법 반포 시에 이미 기업 재편업무를 완료하였고 《기업 재편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약간문제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9] 제59호)에 근거하여 특수세무처리를 하였으며 기업이 이 방법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세무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 방법의 요구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한다. 2008년도와 2009년까지 기업 재편업무 세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0년 7월 26일  **제1장 총칙과 정의**  **제1조** 기업 재편업무 기업소득세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고 보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함) 및 그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징수관리법》및 그 실시세칙(이하 《징수관리법》이라 함),《기업 재편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약간문제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9] 제59호)(이하 《통지》라 함)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기업 재편이라 함은 《통지》제1조에서 규정한, 기업의 법률형태의 변경, 채무 재편, 주식인수, 자산인수, 합병, 분립 등 각종 재편을 말한다.  **제3조** 기업 재편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당사자 측이라 함은 재편유형에 따라 각각 아래의 기업을 가리킨다.  (1) 채무 재편에서의 당사자 측이란 채무자와 채권자를 가리킨다.  (2) 주식인수에서의 당사자 측이란 인수인, 양도인 및 인수대상기업을 가리킨다.  (3) 자산인수에서의 당사자 측이란 양도인과 수양인을 가리킨다.  (4) 합병에서의 당사자 측이란 합병기업, 합병대상기업 및 그들의 주주를 가리킨다.  (5) 분립에서의 당사자 측이란 분립기업, 분립대상기업 및 그들의 주주를 가리킨다.  **제4조** 동일 재편업무의 당사자측은 일치한 세무처리원칙, 즉 통일적으로 일반적 세무처리나 특수성 세무처리방법을 취한다.  **제5조** 《통지》제1조 제4호에서 실질적인 경영성 자산이라 함은 기업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생산경영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을 말하며 여기에는 경영에 사용하는 각종 자산, 기업이 사용하는 상업정보와 기술,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투자자산 등을 포함한다.  **제6조** 《통지》제2조에서 지주기업이라 함은 본 기업이 직접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7조** 《통지》에서 규정한 기업 재편의 재편일은 하기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1) 채무 재편은, 채무 재편 계약이나 합의서의 효력 발생일이 재편일로 된다.  (2) 주식인수는, 양도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고 주식변경수속을 완료한 날이 재편일로 된다.  (3) 자산인수는, 양도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고 자산수불을 완료한 날이 재편일로 된다.  (4) 기업합병은, 합병기업이 합병대상기업의 자산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상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이 재편일로 된다.  (5) 기업분립은, 분립기업이 분립대상기업의 자산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상 변경등록 완료한 날이 재편일로 된다.  **제8조** 재편 완성년도는 각 당사자측이 적용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확정하고 구체적으로는 각 당사자측이 회계감사의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여 확정한다. 당사자측이 적용하는 회계준칙의 차이로 재편업무 완성년도가 달라지는 경우 각 당사자측이 협상하여 동일 납세연도를 재편업무 완성연도로 한다.  **제9조** 이 방법에서 평가기구라 함은 합법적 자격을 가진 중국의 자산평가기구를 말한다.  **제2장 기업 재편의 일반성 세무처리 관리**  **제10조** 기업이 《통지》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개인 독자기업, 합명기업 등 비 법인조직으로 전환하거나 등록지를 중화인민공화국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포함)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업 청산업무 소득세 처리 약간문제와 관련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9] 제60호) 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해야 한다.  기업이 제출하는 《기업청산 소득세신고서》에는 하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기업의 법률형태 변경과 관련한 공상부서나 정부 기타 부서의 인가서류.  (2) 기업 총재산의 조세계산기준 및 평가기구가 제시한 자산평가보고서.  (3) 기업의 채권, 채무 처리 및 귀속상황 보고서.  (4) 주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와 증명서류.  **제11조** 기업에 《통지》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한 채무 재편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기관의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1) 비 통화자산으로 채무를 청산한 경우 각 당사자측이 체결한 채무청산합의서나 계약 및 비 통화자산 가격의 공정성을 확인한 합법적 증거.  (2)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측이 체결한 채권의 주식전환 합의서나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제12조** 기업에 《통지》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주식인수, 자산인수 재편업무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기간의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1) 각 당사자측이 서명한 주식인수, 자산인수업무 계약서나 합의서.  (2) 주식가격, 자산가격의 공정성과 관련한 합법적 증거.  **제13조** 기업에《통지》제4조 제(4)호에서 규정한 합병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財稅[2009] 제60호 문건규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합병대상기업이 제출하는《기업청산 소득세 신고서》에는 하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기업의 합병과 관련한 공상부서나 정부 기타부서의 인가서루.  (2) 기업의 재산전액 및 부채의 세금계산기준 및 평가기구의 자산평가보고서.  (3) 기업의 부채 처리 또는 귀속상황 보고서.  (4) 주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와 증명서류.  **제14조** 기업에 《통지》제4조 제(5)호에서 규정한 분립이 발생하고 분립 후에 존속하지 않는 분립대상기업은 財稅[2009] 제60호 문건규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분립대상기업이 제출하는《기업청산 소득세 신고서》에는 하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기업의 분립과 관련한 공상부서나 정부 기타 부서의 인가서류.  (2) 분립대상기업 자산전액의 세금계산기준 및 평가기구의 자산평가 보고서.  (3) 기업의 부채 처리 또는 귀속상황 보고서.  (4) 주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와 증명서류.  **제15조** 기업이 합병 또는 분립하는 상황에서 각 합병기업이나 각 분립기업이, 《세법》제57조의 규정 중 기업 전체(즉, 생산경영소득의 전부)의 조세우대 과도정책을 적용하고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존립기업만 적용하지 못한 조세혜택을 《통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말소한 합병대상기업이나 분립대상기업이 적용하지 못한 조세혜택은 존립기업이 더 승계하지 아니한다. 합병 또는 분립하여 신규 설립한 기업은 상기 조세혜택을 승계하거나 신규 적용하지 못한다. 합병 또는 분립한 각 기업이 《세법》의 조세혜택 규정과 조세우대 과도정책 중 기업의 관련 생산경영 프로젝트소득에 대한 조세혜택 승계문제는 《실시조례》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장 기업 재편 특수성 세무처리 관리**  **제16조** 기업의 재편업무가 《통지》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 특수성 세무처리를 선택한 경우 《통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기업재편 각 측이 세무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재편 주도측이 주관세무기관에 신청하고 급별로 성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신청을 제출한 주도측과 기타 당사자측이 동일 성(자치구, 직할시)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도측 세무기관이 관련 확인서의 부본을 기타 당사자측 소재지 성 세무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확인신청을 접수한 성 세무기관은 원칙상 당해 연도 기업소득세 통합납부 전에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하는 사유를 주도측에 고지해야 한다.  **제17조** 기업재편의 주도측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1) 채무재편은 채무자가 주도측이 된다.  (2) 주식인수는 주식 양도인이 주도측이 된다.  (3) 자산인수는 자산 양도인이 주도측이 된다.  (4) 흡수합병은 합병 후 존립하는 기업, 신규 설립 합병은 합병 전에 자산이 보다 많은 기업이 주도측이 된다.  (5) 분립은 분립대상기업이나 분립 후 존립하는 기업이 주도측이 된다.  **제18조** 재편업무가 발생한 기업이 《통지》제5조 제(1)호의 요구에 따라 등록 또는 확인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측면에서 기업재편의 합리한 상업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1) 재편활동의 거래방식. 즉 재편활동에서 취하는 구체형태, 거래배경, 거래일시, 거래 전과 거래 후의 운행방식 및 관련 상업규칙  (2) 당해 거래의 형식과 성격. 즉 형식상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권리와 책임, 다시 말해서 당해 거래의 법적 결과. 그리고 거래로 인해 실질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발생하는 최종결과  (3) 재편활동으로 인해 각 거래 측의 세무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  (4) 각 재편 측이 거래에서 취득한 재무상황의 변화  (5) 재편활동이 시장원칙을 따를 시에 각 거래 측에게 발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잠재적 의무를 가져다주는가의 여부  (6) 비 주민기업이 재편활동에 참여한 상황.  **제19조** 《통지》제5조 제(3)호와 제(5)호에서 “기업 재편 후 12개월 내”라고 한 것은 재편일로부터 기산하여 연속 12개월 내를 말한다.  **제20조** 《통지》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한 원 주요주주는 원래 양도기업이나 인수기업의 주식 20% 이상을 소지하였던 주주를 말한다.  **제21조** 《통지》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동일통제라 함은 합병에 참여한 기업이 합병 전에 모두 동일한 일방이나 동등한 여러 측의 최종통제를 받았고 그 통제가 임시적이 아님을 말한다.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을 합병 전과 후에도 최종통제권을 가진 동등한 여러 측이라 함은 계약서나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의 채무와 경영정책에 대하여 결제, 통제권을 가진 투자자 그룹을 말한다. 기업합병 전에 합병에 참여한 각 측이 최종통제를 12개월 이상 받았다면 기업합병 후에 구성된 그룹의 최종통제 측에 대한 최종통제 역시 12개월이 지속되어야 한다.  **제22조** 기업에 《통지》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재편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채무재편으로 인해 발생한 과세소득액이 당해 연도 과세소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채무재편 소득을 5개 납세연도 내의 각 연도납세액에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경우에는 아래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당사자측 채무재편의 총체적 상황설명서(신청확인을 취한 경우 기업이 신청함. 이하 같음), 상황설명서에는 채무재편의 상업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2. 각 당사자가 체결한 채무재편 계약서나 합의서.  3. 채무재편으로 조성된 의무납세액, 기업의 당해 연도 의무납세액 상황에 대한 설명.  4.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와 증명서류.  (2) 채권의 주식전환업무가 발생하였고 잠시 채무자의 채무상환 소득과 손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채권자의 주식투자 세금계산기준을 원 세금계산기준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하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채무재편 전반 상황에 대한 설명서. 상황설명서에는 채무재편의 상업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2. 쌍방이 체결한 채무의 주식전환 계약서나 합의서.  3. 기업의 주식전환 공정가격 증명서.  4. 관련 기업의 지분권 변경사항에 대한 공상부서 및 관련부서의 증명서류.  5.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와 증명서류.  **제23조** 기업에 《통지》제6조 제(2)호에서 규정한 주식인수업무가 발생한 경우 하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식인수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서. 설명서에는 주식인수의 상업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2) 양자 또는 다자간에 체결한 주식인수업무 계약서나 합의서.  (3) 평가기구가 제시한, 양도 또는 지급한 주식의 공정가치 증명서류.  (4) 재편이 특수성 세무처리조건에 부합한다는 증명자료. 증명자료에는 주식 비율, 지급가격상황 및 12개월 내에 자산의 원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고 원 주요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서역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5) 당해 기업의 주식변경사항을 확인한 공상부서 등 관련 부서의 증명자료.  (6)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와 증명서류.  **제24조** 기업에 《통지》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자산인수업무가 발생한 경우 하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자산인수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설명서. 상황설명서에는 자산인수의 상업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2) 각 당사자가 체결한 자산인수 계약서나 합의서.  (3) 평가기구가 제시한, 자산인수와 관련한 자산평가보고서.  (4) 양수기업 주식 세금계산기준의 유효증명서류.  (5) 재편이 특수성 세무처리조건에 부합한다는 증명자료. 증명자료에는 주식 비율, 지급가격상황 및 12개월 내에 자산의 원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고 원 주요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약속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6) 당해 기업의 주식변경사항을 확인한 공상부서 등 관련 부서의 증명자료.  (7)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와 증명서류.  **제25조** 기업에 《통지》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하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기업합병 당사자 전반에 대한 상황설명서. 상황 설명서에는 기업합병의 상업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2) 기업합병에 대한 정부 주관부서의 인가서류.  (3) 각 기업합병 당사자의 지분권 관계 설명서.  (4) 합병대상기업의 정미자산, 각 계정별 자산, 부채 및 그 장부상의 가치와 세금계산기준 등 관련 자료.  (5) 재편이 특수성 세무처리조건에 부합된다는 증명자료. 증명자료에는 합병 전 기업의 각 주주가 취득한 지분권의 지급비율상황 및 12개월 내에 자산의 원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고 원 주요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6) 당해 기업의 주식변경사항을 확인한 공상부서의 증명자료.  (7) 주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와 증명서류.  **제26조** 《통지》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합병기업이 합병대상기업의 결손을 벌충하는 한도액이라 함은 《세법》에서 규정한 남은 이월연도에 합병기업이 매년 합병된 기업의 결손을 벌충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한다.  **제27조** 기업에 《통지》제6조 제(5)호에서 규정한 분립이 발생한 경우 하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기업분립 당사자 전반에 대한 상황설명서. 상황설명서에는 기업분립의 상업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2) 기업분립에 대한 정부 주관부서의 인가서류.  (3) 분립된 기업의 정미자산, 각 계정별 자산, 부채 및 그 장부상의 가치와 세금계산기준 등 관련 자료.  (4) 재편이 특수성 세무처리조건에 부합한다는 증명자료. 증명자료에는 분립 후 기업의 각 주주가 취득한 지분권의 지급비율상황 및 12개월 내에 자산의 원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고 원 주요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5) 공상부서가 인정한, 분립기업과 분립대상기업 주주의 지분권비율 증명자료. 분립 후 분립기업과 분립대상기업의 영업허가증 사본. 분립기업과 분립대상기업의 분립업무 장부처리내용의 사본.  (6)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와 증명서류.  **제28조** 《통지》제6조 제(4)호 제2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전 관련 소득세사항은 합병기업이 승계하고 《통지》제6조 제(5)호 제2목의 규정에 따라 분립한 기업의 관련 소득세사항은 분립한 기업이 승계한다. 그 사항에는 미확인 자산손실, 소득의 분기별 확인처리 및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세수우대정책 승계처리문제 등을 포함한다. 그중 세수우대정책 승계처리문제는, 무릇 《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전반(즉 생산경영소득의 전부)에 조세우대 과도정책을 적용하고 합병 또는 분립 후 기업의 성격 및 조세혜택 적용조건이 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각 기업이나 분립 전 분립대상기업의 남은 기간의 조세우대정책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합병 전 각 기업의 조세우대정책 미 적용연한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합병 후 기업의 매 연도 의무납세 소득액은 통일적으로 합병일로부터 합병 후 기업의 총자산에서 합병 전 각 기업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구분하고 조세우대정책 미 적용연한에 따라 의무납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합병 전 각 기업 또는 분립 전 분립대상기업이 《세법》의 조세우대규정 및 조세우대 과도정책 중 관련 생산경영종목 조세우대 승계 처리문제는 《실시조례》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통지》제5조 제(3)호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각 당사자는 재편업무 완료 후 차기 연도 기업소득세 신고 시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상항설명서를 제출하여 기업이 재편 후 연속 12개월 내에 특수성 세무처리에 부합되는 조건이 변경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제30조** 당사자 중 일방이 규정기간 내에 생산경영업무, 회사성격, 자산 또는 주식구조 등의 상황이 변경되어 재편업무가 더는 특수성 세무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변경이 발생한 당사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여타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도측은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관련 변경을 그 주관세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전 항에서 지적한 상황이 발생한 후 60일내에 《통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편업무의 세무처리를 조정해야 한다. 원 거래 각 측은 원 거래 수행 시 각자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에 따라 재편업무의 수익 또는 결손을 계산하고 거래완성 납세연도의 의무납세 소득액과 그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세금계산기준을 조정하여 각자의 주관세무기관에 조정한 거래완성 납세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조정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각 당사자의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이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을 신청하였거나 확인한 재편업무에 대한 추적 감독관리를 진행하여 기업의 다이내믹 변화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기타 당사자의 주관세무기관과 연락하고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제32조** 《통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 재편업무가 연속 12개월 내에 단계별로 진행되었고 2개 납세연도를 거쳤으며 각 당사자의 제1단계의 거래가 특수성 세무처리조건에 부합하여 협상일치를 보고 특수성 세무처리를 선택하였다면 제1단계 거래 완료 후에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 주관세무기관은 관련 자료를 심사확인한 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잠시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듬해에는 다음 번 거래 완료 후에 이 방법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인한 다음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상기한 같이 거래가 1개 연도를 이월하여 단계별로 진행되고 당사자가 첫 납세연도에 특수성 세무처리조건에 부합여부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성 세무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차기 납세연도에 전부 거래를 완성한 후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 납세연도의 기업소득세 연도신고서를 조정하고 각 주관세무기관은 과다 징수한 세금을 반환하거나 당해 연도세금을 상계해야 한다.  **제34조** 기업 재편 각 당사자는 당해 재편과 관련한 증빙과 자료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징수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다 지역 간 재편 세수관리**  **제35조** 《통지》제7조에서 규정한 재편이 발생하여 무릇 특수성 세무처리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 방법 제3장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36조** 《통지》제7조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재편이 발생하여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한 경우에는 《〈비 주민기업 소득세 원천공제 관리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9] 재3호)와 《비 주민기업 주식양도소득 기업소득세 관리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函[2009] 제698호)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제37조** 《통지》제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재편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기업은 그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하기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1. 당사자 재편상황에 대한 설명서. 설명서에는 주식양도의 상업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2. 쌍방이 체결한 주식양도합의서.  3. 쌍방의 지분권 지배 상황설명서.  4. 평가기구가 제시한, 자산 또는 주식 평가보고서. 보고서에는 양도한 각 계정별 자산과 부채의 공정한 가치를 별도로 열거해야 한다.  5. 재편이 특수성 세무처리조건에 부합한다는 증명자료. 여기에는 주식 또는 자산 양도비율, 지불대가 상황 및 12개월 내에 자산의 원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등을 포함한다.  6.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  | **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  **管理办法**  国家税务总局公告2010年第4号  　　现将《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管理办法》予以发布，自2010年1月1日起施行。  　　本办法发布时企业已经完成重组业务的，如适用《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处理若干问题的通知》（财税〔2009〕59号）特殊税务处理，企业没有按照本办法要求准备相关资料的，应补备相关资料；需要税务机关确认的，按照本办法要求补充确认。2008、2009年度企业重组业务尚未进行税务处理的，可按本办法处理。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二○一○年七月二十六日  **第一章　总则及定义**  **第一条**　为规范和加强对企业重组业务的企业所得税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简称《税法》）及其实施条例（以下简称《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以下简称《征管法》）、《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处理若干问题的通知》（财税〔2009〕59号）（以下简称《通知》）等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企业重组业务，是指《通知》第一条所规定的企业法律形式改变、债务重组、股权收购、资产收购、合并、分立等各类重组。  **第三条**　企业发生各类重组业务，其当事各方，按重组类型，分别指以下企业：  　　（一）债务重组中当事各方，指债务人及债权人。  （二）股权收购中当事各方，指收  购方、转让方及被收购企业。  　　（三）资产收购中当事各方，指转让方、受让方。  　　（四）合并中当事各方，指合并企业、被合并企业及各方股东。  　　（五）分立中当事各方，指分立企业、被分立企业及各方股东。  **第四条**　同一重组业务的当事各方应采取一致税务处理原则，即统一按一般性或特殊性税务处理。  **第五条**　《通知》第一条第（四）项所称实质经营性资产，是指企业用于从事生产经营活动、与产生经营收入直接相关的资产，包括经营所用各类资产、企业拥有的商业信息和技术、经营活动产生的应收款项、投资资产等。  **第六条**　《通知》第二条所称控股企业，是指由本企业直接持有股份的企业。  **第七条**　《通知》中规定的企业重组，其重组日的确定，按以下规定处理：  　　（一）债务重组，以债务重组合同或协议生效日为重组日。  　　（二）股权收购，以转让协议生效且完成股权变更手续日为重组日。  　　（三）资产收购，以转让协议生效且完成资产实际交割日为重组日。  　　（四）企业合并，以合并企业取得被合并企业资产所有权并完成工商登记变更日期为重组日。  　　（五）企业分立，以分立企业取得被分立企业资产所有权并完成工商登记变更日期为重组日。  **第八条**　重组业务完成年度的确定，可以按各当事方适用的会计准则确定，具体参照各当事方经审计的年度财务报告。由于当事方适用的会计准则不同导致重组业务完成年度的判定有差异时，各当事方应协商一致，确定同一个纳税年度作为重组业务完成年度。  **第九条**　本办法所称评估机构，是指具有合法资质的中国资产评估机构。  **第二章　企业重组一般性税务处理管理**  **第十条**　企业发生《通知》第四条第（一）项规定的由法人转变为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等非法人组织，或将登记注册地转移至中华人民共和国境外（包括港澳台地区），应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清算业务企业所得税处理若干问题的通知》（财税〔2009〕60号）规定进行清算。  　　企业在报送《企业清算所得纳税申报表》时，应附送以下资料：  　　（一）企业改变法律形式的工商部门或其他政府部门的批准文件；  　　（二）企业全部资产的计税基础以及评估机构出具的资产评估报告；  　　（三）企业债权、债务处理或归属情况说明；  　　（四）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证明。  **第十一条**　企业发生《通知》第四条第（二）项规定的债务重组，应准备以下相关资料，以备税务机关检查。  　　（一）以非货币资产清偿债务的，应保留当事各方签订的清偿债务的协议或合同，以及非货币资产公允价格确认的合法证据等；  　　（二）债权转股权的，应保留当事各方签订的债权转股权协议或合同。  **第十二条**　企业发生《通知》第四条第（三）项规定的股权收购、资产收购重组业务，应准备以下相关资料，以备税务机关检查。  　　（一）当事各方所签订的股权收购、资产收购业务合同或协议；  　　（二）相关股权、资产公允价值的合法证据。  **第十三条**　企业发生《通知》第四条第（四）项规定的合并，应按照财税〔2009〕60号文件规定进行清算。  　　被合并企业在报送《企业清算所得纳税申报表》时，应附送以下资料：  　　（一）企业合并的工商部门或其他政府部门的批准文件；  　　（二）企业全部资产和负债的计税基础以及评估机构出具的资产评估报告；  　　（三）企业债务处理或归属情况说明；  　　（四）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证明。  **第十四条**　企业发生《通知》第四条第（五）项规定的分立，被分立企业不再继续存在，应按照财税〔2009〕60号文件规定进行清算。  　　被分立企业在报送《企业清算所得纳税申报表》时，应附送以下资料：  　　（一）企业分立的工商部门或其他政府部门的批准文件；  　　（二）被分立企业全部资产的计税基础以及评估机构出具的资产评估报告；  　　（三）企业债务处理或归属情况说明；  　　（四）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证明。  **第十五条**　企业合并或分立，合并各方企业或分立企业涉及享受《税法》第五十七条规定中就企业整体（即全部生产经营所得）享受的税收优惠过渡政策尚未期满的，仅就存续企业未享受完的税收优惠，按照《通知》第九条的规定执行；注销的被合并或被分立企业未享受完的税收优惠，不再由存续企业承继；合并或分立而新设的企业不得再承继或重新享受上述优惠。合并或分立各方企业按照《税法》的税收优惠规定和税收优惠过渡政策中就企业有关生产经营项目的所得享受的税收优惠承继问题，按照《实施条例》第八十九条规定执行。  **第三章　企业重组特殊性税务处理管理**  **第十六条**　企业重组业务，符合《通知》规定条件并选择特殊性税务处理的，应按照《通知》第十一条规定进行备案；如企业重组各方需要税务机关确认，可以选择由重组主导方向主管税务机关提出申请，层报省税务机关给予确认。  　　采取申请确认的，主导方和其他当事方不在同一省（自治区、市）的，主导方省税务机关应将确认文件抄送其他当事方所在地省税务机关。  　　省税务机关在收到确认申请时，原则上应在当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前完成确认。特殊情况，需要延长的，应将延长理由告知主导方。  **第十七条**　企业重组主导方，按以下原则确定：  　　（一）债务重组为债务人；  　　（二）股权收购为股权转让方；  　　（三）资产收购为资产转让方；  　　（四）吸收合并为合并后拟存续的企业，新设合并为合并前资产较大的企业；  　　（五）分立为被分立的企业或存续企业。  **第十八条**　企业发生重组业务，按照《通知》第五条第（一）项要求，企业在备案或提交确认申请时，应从以下方面说明企业重组具有合理的商业目的：  　　（一）重组活动的交易方式。即重组活动采取的具体形式、交易背景、交易时间、在交易之前和之后的运作方式和有关的商业常规；  　　（二）该项交易的形式及实质。即形式上交易所产生的法律权利和责任，也是该项交易的法律后果。另外，交易实际上或商业上产生的最终结果；  　　（三）重组活动给交易各方税务状况带来的可能变化；  　　（四）重组各方从交易中获得的财务状况变化；  　　（五）重组活动是否给交易各方带来了在市场原则下不会产生的异常经济利益或潜在义务；  　　（六）非居民企业参与重组活动的情况。  **第十九条**　《通知》第五条第（三）和第（五）项所称“企业重组后的连续12个月内”，是指自重组日起计算的连续12个月内。  **第二十条**　《通知》第五条第（五）项规定的原主要股东，是指原持有转让企业或被收购企业20%以上股权的股东。  **第二十一条**　《通知》第六条第（四）项规定的同一控制，是指参与合并的企业在合并前后均受同一方或相同的多方最终控制，且该控制并非暂时性的。能够对参与合并的企业在合并前后均实施最终控制权的相同多方，是指根据合同或协议的约定，对参与合并企业的财务和经营政策拥有决定控制权的投资者群体。在企业合并前，参与合并各方受最终控制方的控制在12个月以上，企业合并后所形成的主体在最终控制方的控制时间也应达到连续12个月。  **第二十二条**　企业发生《通知》第六条第（一）项规定的债务重组，根据不同情形，应准备以下资料：  　　（一）发生债务重组所产生的应纳税所得额占该企业当年应纳税所得额50%以上的，债务重组所得要求在5个纳税年度的期间内，均匀计入各年度应纳税所得额的，应准备以下资料：  　　1.当事方的债务重组的总体情况说明（如果采取申请确认的，应为企业的申请，下同），情况说明中应包括债务重组的商业目的；  　　2.当事各方所签订的债务重组合同或协议；  　　3.债务重组所产生的应纳税所得额、企业当年应纳税所得额情况说明；  　　4.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证明。  　　（二）发生债权转股权业务，债务人对债务清偿业务暂不确认所得或损失，债权人对股权投资的计税基础以原债权的计税基础确定，应准备以下资料：  　　1.当事方的债务重组的总体情况说明。情况说明中应包括债务重组的商业目的；  　　2.双方所签订的债转股合同或协议；  　　3.企业所转换的股权公允价格证明；  　　4.工商部门及有关部门核准相关企业股权变更事项证明材料；  　　5.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证明。  **第二十三条**　企业发生《通知》第六条第（二）项规定的股权收购业务，应准备以下资料：  　　（一）当事方的股权收购业务总体情况说明，情况说明中应包括股权收购的商业目的；  　　（二）双方或多方所签订的股权收购业务合同或协议；  　　（三）由评估机构出具的所转让及支付的股权公允价值；  　　（四）证明重组符合特殊性税务处理条件的资料，包括股权比例，支付对价情况，以及12个月内不改变资产原来的实质性经营活动和原主要股东不转让所取得股权的承诺书等；  　　（五）工商等相关部门核准相关企业股权变更事项证明材料；  　　（六）税务机关要求的其他材料。  **第二十四条**　企业发生《通知》第六条第（三）项规定的资产收购业务，应准备以下资料：  　　（一）当事方的资产收购业务总体情况说明，情况说明中应包括资产收购的商业目的；  　　（二）当事各方所签订的资产收购业务合同或协议；  　　（三）评估机构出具的资产收购所体现的资产评估报告；  　　（四）受让企业股权的计税基础的有效凭证；  　　（五）证明重组符合特殊性税务处理条件的资料，包括资产收购比例，支付对价情况，以及12个月内不改变资产原来的实质性经营活动、原主要股东不转让所取得股权的承诺书等；  　　（六）工商部门核准相关企业股权变更事项证明材料；  　　（七）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材料证明。  **第二十五条**　企业发生《通知》第六条第（四）项规定的合并，应准备以下资料：  　　（一）当事方企业合并的总体情况说明。情况说明中应包括企业合并的商业目的；  　　（二）企业合并的政府主管部门的批准文件；  　　（三）企业合并各方当事人的股权关系说明；  　　（四）被合并企业的净资产、各单项资产和负债及其账面价值和计税基础等相关资料；  　　（五）证明重组符合特殊性税务处理条件的资料，包括合并前企业各股东取得股权支付比例情况、以及12个月内不改变资产原来的实质性经营活动、原主要股东不转让所取得股权的承诺书等；  　　（六）工商部门核准相关企业股权变更事项证明材料；  　　（七）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证明。  **第二十六条**　《通知》第六条第（四）项所规定的可由合并企业弥补的被合并企业亏损的限额，是指按《税法》规定的剩余结转年限内，每年可由合并企业弥补的被合并企业亏损的限额。  **第二十七条**　企业发生《通知》第六条第（五）项规定的分立，应准备以下资料：  　　（一）当事方企业分立的总体情况说明。情况说明中应包括企业分立的商业目的；  　　（二）企业分立的政府主管部门的批准文件；  　　（三）被分立企业的净资产、各单项资产和负债账面价值和计税基础等相关资料；  　　（四）证明重组符合特殊性税务处理条件的资料，包括分立后企业各股东取得股权支付比例情况、以及12个月内不改变资产原来的实质性经营活动、原主要股东不转让所取得股权的承诺书等；  　　（五）工商部门认定的分立和被分立企业股东股权比例证明材料；分立后，分立和被分立企业工商营业执照复印件；分立和被分立企业分立业务账务处理复印件；  　　（六）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证明。  **第二十八条**　根据《通知》第六条第（四）项第2目规定，被合并企业合并前的相关所得税事项由合并企业承继，以及根据《通知》第六条第（五）项第2目规定，企业分立，已分立资产相应的所得税事项由分立企业承继，这些事项包括尚未确认的资产损失、分期确认收入的处理以及尚未享受期满的税收优惠政策承继处理问题等。其中，对税收优惠政策承继处理问题，凡属于依照《税法》第五十七条规定中就企业整体（即全部生产经营所得）享受税收优惠过渡政策的，合并或分立后的企业性质及适用税收优惠条件未发生改变的，可以继续享受合并前各企业或分立前被分立企业剩余期限的税收优惠。合并前各企业剩余的税收优惠年限不一致的，合并后企业每年度的应纳税所得额，应统一按合并日各合并前企业资产占合并后企业总资产的比例进行划分，再分别按相应的剩余优惠计算应纳税额。合并前各企业或分立前被分立企业按照《税法》的税收优惠规定以及税收优惠过渡政策中就有关生产经营项目所得享受的税收优惠承继处理问题，按照《实施条例》第八十九条规定执行。  **第二十九条**　适用《通知》第五条第（三）项和第（五）项的当事各方应在完成重组业务后的下一年度的企业所得税年度申报时，向主管税务机关提交书面情况说明，以证明企业在重组后的连续12个月内，有关符合特殊性税务处理的条件未发生改变。  **第三十条**　当事方的其中一方在规定时间内发生生产经营业务、公司性质、资产或股权结构等情况变化，致使重组业务不再符合特殊性税务处理条件的，发生变化的当事方应在情况发生变化的30天内书面通知其他所有当事方。主导方在接到通知后30日内将有关变化通知其主管税务机关。  　　上款所述情况发生变化后60日内，应按照《通知》第四条的规定调整重组业务的税务处理。原交易各方应各自按原交易完成时资产和负债的公允价值计算重组业务的收益或损失，调整交易完成纳税年度的应纳税所得额及相应的资产和负债的计税基础，并向各自主管税务机关申请调整交易完成纳税年度的企业所得税年度申报表。逾期不调整申报的，按照《征管法》的相关规定处理。  **第三十一条**　各当事方的主管税务机关应当对企业申报或确认适用特殊性税务处理的重组业务进行跟踪监管，了解重组企业的动态变化情况。发现问题，应及时与其他当事方主管税务机关沟通联系，并按照规定给予调整。  **第三十二条**　根据《通知》第十条规定，若同一项重组业务涉及在连续12个月内分步交易，且跨两个纳税年度，当事各方在第一步交易完成时预计整个交易可以符合特殊性税务处理条件，可以协商一致选择特殊性税务处理的，可在第一步交易完成后，适用特殊性税务处理。主管税务机关在审核有关资料后，符合条件的，可以暂认可适用特殊性税务处理。第二年进行下一步交易后，应按本办法要求，准备相关资料确认适用特殊性税务处理。  **第三十三条**　上述跨年度分步交易，若当事方在首个纳税年度不能预计整个交易是否符合特殊性税务处理条件，应适用一般性税务处理。在下一纳税年度全部交易完成后，适用特殊性税务处理的，可以调整上一纳税年度的企业所得税年度申报表，涉及多缴税款的，各主管税务机关应退税，或抵缴当年应纳税款。  **第三十四条**　企业重组的当事各方应该取得并保管与该重组有关的凭证、资料，保管期限按照《征管法》的有关规定执行。  **第四章　跨境重组税收管理**  **第三十五条**　发生《通知》第七条规定的重组，凡适用特殊性税务处理规定的，应按照本办法第三章相关规定执行。  **第三十六条**　发生《通知》第七条第（一）、（二）项规定的重组，适用特殊税务处理的，应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非居民企业所得税源泉扣缴管理暂行办法〉的通知》（国税发〔2009〕3号）和《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非居民企业股权转让所得企业所得税管理的通知》（国税函〔2009〕698号）要求，准备资料。  **第三十七条**　发生《通知》第七条第（三）项规定的重组，居民企业应向其所在地主管税务机关报送以下资料：  　　1.当事方的重组情况说明，申请文件中应说明股权转让的商业目的；  　　2.双方所签订的股权转让协议；  　　3.双方控股情况说明；  　　4.由评估机构出具的资产或股权评估报告。报告中应分别列示涉及的各单项被转让资产和负债的公允价值；  　　5.证明重组符合特殊性税务处理条件的资料，包括股权或资产转让比例，支付对价情况，以及12个月内不改变资产原来的实质性经营活动、不转让所取得股权的承诺书等；  　　6.税务机关要求的其他材料。 |